

-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720
------------	-----

2019년 6월 14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상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9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지하철 안전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철 노후시설 정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신속 추진에 필요한 예

산을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관련법령 : (공동)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 사업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설치
- 노후역사 환경개선(리모델링) 사업 등

(3)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안전문제 및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

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 필요

- 다만,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추경 예산지원 없이는 관련 대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편성하기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18년 12월말 기준 영업연장 300.1km, 지하철역 277개역, 전동차 3,551량을 운영하면서 일평균 724만명의 수송인원 및 45억 41백만원의 운수수익을 나타내고 있으나, 당기순손실 5,389억원, 누적적자 14조 3,682억원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당기순손실의 65.7%에 이르는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¹⁾ 운영손실, 원가보전률 76.9% 수준인 낮은 수송원가, 공사 자체의 자

1) 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구노력 미흡 등에 기인한 것이며,

향후 서울시 및 수도권 경제인구 감소에 따른 지하철 이용자 증가
한계와 노인 인구의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서울지하철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음

※ 참고 :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승차인원(천명)	1,809,823	1,778,175	1,774,163	1,751,579	1,751,695
무임인원(천명)	248,145	249,939	253,559	258,250	261,047
무임점유율	13.7%	14.1%	14.3%	14.7%	14.9%
무임손실(백만원)	287,039	314,354	344,185	350,647	353,974
당기순손실(백만원)	424,530	413,709	385,048	525,362	538,893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67.6%	76.0%	89.4%	66.7%	65.7%

-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지하철의 안전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설치, 노후역사 환경개선(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
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교통공
사 출자금을 반영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음²⁾
- 서울시는 이미 2019년 예산으로 5,122억 22백만원을 서울교통
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사업 중 '공사전출금' 사업은 58.5%(1,742억 48백만원) 감소한
1,233억 76백만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은 49%(159억

2)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659) 제출일 : 2019.5.23

36백만원) 증가한 484억 36백만원, '4호선 역사(쌍문역·서울역·한성대입구역) 환경개선' 사업은 100%(24억 30백만원) 증가한 48억 60백만원을 출자하는 한편

신규 사업으로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30억 30백만원, '1호선 역사(청량리역·제기동역·종로3가역·서울역) 리모델링' 사업에 22억 83백만원,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설치' 사업에 23억 50백만원을 출자코자 하는 것임

-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경우 개통한지 최대 45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며, 서울시는 2023년까지 4조 5,0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재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공사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인 점을 고려할 때

당면한 노후시설 재투자 및 미세먼지 대책의 적기 시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는 필요하다 할 것임

다만, 동 동의안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출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추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이후 공사가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 : 2019년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기정예산)	2019년 (추경예산안)	증 감	비 고
합 계	512,222,230		△148,219,000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6,734,000			국비:시비:운영기관 =30%:35%:35%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0,513,50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32,500,000	48,436,000	15,936,000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2,735,000			시비:운영기관 =50%:50%
지하철 친환경 LED 조명 교체	212,000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7,328,000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2,258,000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0	3,030,000	3,030,000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12,000,000			시비:운영기관 =13%:87%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300,000			시비 역당 1억원씩 출자
공사전출금	297,623,730	123,375,730	△174,248,000	
문화예술철도 조성	21,715,000			시비 100% 출자
1호선 역사(동대문역·신설동역·종로5가역) 리모델링	19,513,000			
4호선 역사(쌍문역·서울역·한성대입구역) 환경개선	2,430,000	4,860,000	2,430,000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600,000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1,350,000			
PSD 감지센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500,000			
지하철 감시설비 및 녹화장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500,000			
지하철 역사내 수유시설 만족도 조사	20,000			
전동차 옥상 고압기지 애자 및 공기애관 교체개량	1,000,000			
응급 궤도복구 실시간 영상감지시스템 설치	200,000			
지하철 역사 냉매관리	2,740,000			
고덕차량기지 진출입선로 지상구간 도상흡음블록 설치	300,000			
7호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1,950,000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	2,300,000			
특수차 중정비 도입	600,000			
노후 지하철역 환경개선 사전 타당성 조사	150,000			
지하철 역사내 바닥 미끄럼방지시설 시범설치	300,000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시민참여)	1,700,000			
동작역 테마계단 조성(시민참여)	150,000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설치	0	2,350,000	2,350,000	
1호선 역사(청량리역·계동역·종로3기역·서울역) 리모델링	0	2,283,000	2,283,00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720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지하철 안전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철 노후시설 정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신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관련법령 : (공통)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설치
- 노후역사 환경개선(리모델링) 사업 등

다.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안전문제 및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 필요
- 다만,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추경 예산지원 없이는 관련 대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정인경 (☎2133-4335)